

2 (第13回－水資源管理第5次)

理解하셔서 原案 通過를 해 주시면 '96年度부터 漢江保全諮詢委員會를 내실 있게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原案 通過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閔相今 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専門委員은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奉萬 專門委員 張奉萬입니다.

(報 告)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I.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서

- (1) 위원회 기능 계속성
- (2) 위원회 소속감 및 안정감이 결여되고
- (3) 위원에 대한 재위촉 절차가 번잡하여 임기연장이 필요하고

나. 매 분기별 1회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소집을 위원회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으로 개정하고

다. 한강관리사업소 직제변경으로 위원회 운영요원 직위를 한강관리사업소 현재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

II. 주요골자

가. 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안 제4조)

나. 위원회 정기회를 분기별 1회에서 년 1회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다. 위원회 운영요원을 현사업소 직제와 일치시키고자 간사는 관리과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서기는 서무계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분과위원회 서기는 관련계장에서 관련과장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III. 참고사항 및 관계법규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필요없음.

IV. 견토의견

가. 개요

○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

1988.12.31. 조례 제2237호로 제정되었음.

○ 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 한강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 진행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한강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었음.

나. 개정안 조항별 분석

조 항	분 석
제4조 (위원의 임기)	임기는 1년을 2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 소속감 양양, 위원 재위촉과 선임의 번잡성 해소를 위하여 타당함.
제7조제2항 (회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년 1회로 개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는 개정안은
제11조제2항 (간사 및 서기)	타당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리과장”을 “관리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계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는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현직제의 직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함.
부 칙	개정안에서 ① 시행일 ② 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한 개정안은 타당함.

다. 종합의견

○ 원안, 심사가결이 타당함.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相今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서울特別市漢江保全諮詢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漢江管理事業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漢江管理事業所長의 答辯을 듣는 순서가 되겠